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7. 3. 6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2월 22일

나. 발 의 자 : 김용범 의원 외 3인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행정위원회(2017. 3. 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용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구 자살 사망자수는 25개 자치구 중 8위인 85명¹⁾으로 4.3일에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2015년 우리구 자살률은 구민 10만명당 22.8명으로 2013년 18.6명에 비해 22.6%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²⁾
- 따라서 소중한 주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에 설치되어 있는 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’의 구성, 회의운영 방식 등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1) 서울시 통계정보 시스템, 2015년 자살률(구별)

2) 통계청, 인구 10만명당 자살률(구별)

나. 주요내용

-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 추가 (안 제9조제1항)
- 위원수를 조정(9명⇒13명) (안 제9조제2항)
-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폐지 (안 제9조제6항)
- 회의개최는 반기별 1회 정례화 (안 제10조제1항)
-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(안 제13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소중한 주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, 회의방식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9조제1항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의 자문 및 적극 추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는 바,
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안 제9조제2항에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‘9명 이내’ 에서 ‘13명 이내’로 조정한 것은 자살 고위험군과 최접점에서 접촉하는 상담전문가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, 민·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례수집과 체계적인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안 제9조제6항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가의 위촉으로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회 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 하는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며,

○ 안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³⁾과 중복되므로 삭제함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구 차원에서 자살예방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,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○ 위원회 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로 정리화한 것을 회의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안 제10조 중 “반기별 1회 개최한다”를 “반기별 1회 개최할 수 있다.”로 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3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2항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. 3. 3.

제안자 : 마숙란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 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한 것을 회의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10조 중 “반기별 1회 개최한다” 를 “반기별 1회 개최할 수 있다.” 로 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0조 중 “반기별 1회 개최한다” 를 “반기별 1회 개최할 수 있다.” 로 함.

수 정 안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회의 운영) 위원회의 회의는 <u>반기별 1회 개최한다.</u>	제10조(회의 운영) ----- <u>반기별 1회 개최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7년 2월 일
발 의 자: 김용범 의원외 3명

1. 제안이유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·구성되어
있는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
한다)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, 회의
운영 방식 등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 추가 (안 제9조제1항)
- 나. 위원수를 조정(9명⇒13명) (안 제9조제2항)
- 다.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폐지 (안 제9조제6항)
- 라. 회의개최는 반기별 1회 정례화 (안 제10조제1항)
- 마.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(안 제1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자문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9명”을 “13명”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”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6항 중 “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”를 “반기별 1회 개최 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하기</u>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<생 략></p> <p>2. <생 략></p> <p>3. <생 략></p> <p>4. <생 략>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<생 략></p> <p>④ <생 략></p> <p>1.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</u></p>	<p>제9조(위원회설치·구성) ① ----- ----- <u>자문하고</u> <u>사업을 적극 추진하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현행과 같음></p> <p>2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 <현행과 같음></p> <p>4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----- -----<u>13명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 <p>④ <현행과 같음></p> <p>1.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</u></p>

<p>2. <생 략></p> <p>3. <생 략></p> <p>4. <생 략></p> <p>5. <생 략></p> <p>⑤ <생 략></p> <p>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	<p>2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 <현행과 같음></p> <p>4. <현행과 같음></p> <p>5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⑤ <현행과 같음></p> <p>⑥ ----- -----한다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0조(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회의 운영) ① ----- ---반기별 1회 개최한다.</p>
<p>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</p> <p>① <생 략>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구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.</p> <p>③ <생 략></p>	<p>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<삭 제>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